



2월 7일(수) 11:30(행사종료) 이후 사용

비고	* 공동배포 : 기획재정부, 외교부	
담당	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대외협력과	과장 고영걸, 서기관 맹준호 (044-200-2154, 2153)
	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	과장 안형익, 사무관 김민주 (044-215-8710, 8713)
	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정책과	과장 최순희, 사무관 이예주 (02-2100-8138, 8133)

OECD가 바라본 대한민국의 ODA

- 우리 ODA에 대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 <동료검토 보고서> 발간 -

□ 한국에 대한 <2018 OECD DAC 동료검토* 보고서> 발간 행사가 2월 7일(수) 오전 정부서울청사(별관)에서 우리 정부, OECD 관계자, 시민사회 및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.

* OECD DAC(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, 개발원조위원회)은 매년 DAC 회원국을 대상으로 ODA 정책 및 집행에 대한 상호 검토를 통해 동 분야 정책의 효과성 제고와 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동료검토(Peer Review) 실시

○ OECD DAC은 작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동료검토 최종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동료검토 보고서 내용을 확정했습니다.

- 2012년 한국에 대한 최초의 동료검토 이후,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개발협력 정책과 집행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*함과 동시에, 한국 ODA의 개선을 위한 12개의 권고사항** (첨부 참조)을 제시했습니다.

* △선진국-개도국 간 가교 역할, △글로벌 공공재 지원 기여, △글로벌 시민의식 제고 교육 및 홍보, △개도국 우선순위에 따른 효과적인 지원, △2012년 권고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 등

** △한국의 ODA 시스템 개선, △평가·성과관리 강화, △시민사회와의 협력확대 등

- 동 보고서 발간 계기 한국을 방문한 샬럿 고니츠키(Charlotte Petri-Gornitzka) OECD 개발원조위원회 의장은, 우리나라에 대한 동료검토 보고서를 소개하고 앞으로 개발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.
- 한국 정부는 동 행사가 우리 국민의 ODA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, 우리 ODA 정책 및 집행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- 정부는 이번 동료검토의 후속조치로 OECD가 제시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(위원장: 국무총리)에 상정, 심의·확정하고,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.
- 이를 통해 우리 ODA 정책과 제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- ※ (첨부1) OECD DAC의 평가 및 권고사항
 (첨부2) OECD 동료검토 보고서 주요 내용
 (첨부3) OECD DAC 개요 및 동료검토(Peer Review)

1 한국의 개발협력 평가

한국은 수원국에서 주요 ODA 공여국으로 발돋움하여, 원조가 한 나라의 경제성장과 인적자원 개발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예시를 보여주었고, 한국의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재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분야 주요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

□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기여

- 한국의 개발경험에 근거,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**국제사회 가교역할** 수행
 - * 중견국 및 BRIICS(Brazil, Russia, India, Indonesia, China and South Africa) 그룹에서 핵심적인 역할 및 글로벌파트너십 등에서 개발효과성 의제 선도
- ‘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’ 달성을 위한 **글로벌 공공재 지원 확대**
 - * 녹색기후기금(GCF) 및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(GGGI) 유치 및 국제기구 활동 지원
- ‘다자협력전략’ 수립 등, **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**
 - *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(MOPAN) 의장 수임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(AIIB) 출자·출연 등
- **국민들의 개발협력 인식제고**를 위한 교육·홍보 등 다양한 활동 전개
 - * ODA 예산의 1.7%를 국내 ODA 인식증진(홍보 및 교육 등)에 활용, DAC 평균 0.2%

□ 협력대상국에 대한 한국의 개발재원

- **고양허성 차관 지원** 및 수원국의 원조 예측가능성 제고 노력
 - * 최저 수준의 차관(loan) 이자율 및 다년도 차관지원 협약 등
- 개도국 개발을 위한 **ODA 이외의 개발재원 지원 노력**
 - * 개도국에 대한 민간직접투자 및 공적재원을 활용한 민간 투자 유치 등
- 개발협력에 있어 **국제사회 규범을 반영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**
 - * '12년 DAC 권고사항 이행 및 삼각협력 확대, 수원국 주인의식 강화 등

2 DAC 권고사항 (12개)

- (ODA 시스템)**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주어진 임무에 따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원조 사업이 기획될 수 있도록 전략 및 운영상의 의사결정이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한국의 ODA 체계를 지속 개선해야 한다.
- (성과관리 및 평가)** 한국의 모든 ODA 시행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성과 관리 및 평가에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.
△위험분석 및 학습 필요성에 기반한 평가 대상 선정, △평가결과 및 내부 교훈 공유, △사업 예산규모 및 개발성과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개선
- (ODA 자원 및 비구속화)**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ODA 규모를 GNI의 0.3%로 확대하기 위한 일정과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, 원조 비구속화 노력을 지속하고,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(countries most in need)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.
- (현지 파트너십)** 현지 사무소 및 재외공관의 활용을 포함, 한국은 협력대상국 정부와의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각 국의 상황에 맞는 한국 고유의 기여 방안에 대한 전략적 관점을 강화해야 한다.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.
△협력대상국 정부와 기존 조정기제 활용, 타 공여기관과의 전략적 정책대화 심화·확대
- (사업 운영)** 한국은 협력대상국의 개별 사업요청 도출 과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포용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, 한국의 자금 지원 종결 이후에도 협력대상국 정부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(인도적 지원)** 한국은 인도적 지원의 변화하는 성격을 반영하고, 한국의 인도적 지원, 평화유지 노력 및 개발협력이 일관되고 상호 보완되도록 하기 위해,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를 검토하여 인도적 지원 전략을 개정해야 한다.
- (취약국 지원)** 한국은 취약성 맥락에서 공동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타 공여국 및 기구와의 조정과 더불어 취약성을 다루는 관련 정책그룹들 내에서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.
- (현장권한 확대)** 새로운 기회 및 도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 승인 과정을 간소화 하고, 사업 수준의 의사결정을 현장으로 더욱 분권화하여 새로운 기회 및 도전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.
- (효과성 제고 및 소통강화)** 효과성 제고 및 모든 이해당사자 간 의사소통 개선을 위해 한국은 △중점협력국에서 한국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점검하고, △재외공관 혹은 현지 사무소가 협력국 정부의 모든 요청사항을 관리 및 조정하도록 하며, △체계 및 절차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한국의 지속적 노력에 대한 파급효과를 모니터링하고, △시너지 제고 및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사업(활동)의 수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.
- (역량강화)** 한국은 개발협력체계 전반에 걸쳐 필요한 역량 및 기술을 검토해야 한다. 동 검토 결과는 한국의 시행기관들이 개발협력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인력계획 수립에 활용되어야 한다.
- (정책일관성)** 한국 정부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이행 과정에서 개도국 관련 정책의 정합성을 강화해야 하며,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.
△국내외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규와 정책들을 잘 조정하고, △개도국에 대한 한국의 긍정적 및 부정적 전파 효과를 고려하여 경제·사회·환경 정책간의 우선순위 조정기제를 구축한다.
- (시민사회 협력)** 한국 정부는 이행 파트너이자 독자적 개발협력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역할을 인정하는 규범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.

1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한국의 국제적 노력

-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개발경험 전수와 SDGs 이행 노력을 제고하고 있으며, DAC 회원국 평균을 상회하는 예산을 개발협력 인식제고에 투입하며 상당한 노력 경주 중
- 개도국의 SDGs 달성 지원을 위해 정부의 대내외 정책이 개도국에 미치는 효과를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 필요

2 개발협력 비전과 정책 체계

- '12년 이후 보여준 개발협력 정책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, 보다 구체적인 전략 마련과 함께 정책 방향의 일관성 확보 필요
- 다자협력전략, 성인지적 관점 지침 수립 등 전략적 기틀을 정비해 왔으나, 동 기틀의 활용 및 민관협력(기업, 학계, 시민사회) 전략에 대한 보완 필요

3 개발재원

- ODA 목표(규모, 비구속화 등) 달성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행*하고 있으며, 수원국과의 양자 및 국제기구와의 다자협력 방향을 개선 중**

* 비구속화 비중 개선 ('15년 48.7% → '16년 57%)

** 국가협력전략(CPS)에 기반한 체계적인 양자협력 및 중점협력 다자기구 선정

-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*(countries most in need)에 대한 원조 집중 노력 지속 중

* 양자 원조 중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 비중: '11년 51% → '15년 54%

- 전통적 원조재원 외 항공권연대기금 등 다양한 개발재원 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, 개도국 국내 재원을 동원하기 위한 지원 및 민간과의 협력방안도 모색할 필요

4

한국의 개발협력 구조와 체계

-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개발협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, '12년 DAC 권고를 반영하여 최고위급 의사결정 및 조정 기구로서 위상과 역할 증대
- 한국은 ODA 사업조정 과정 및 사업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, 본부의 전략적 기능 및 현장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사업관련 의사결정 권한을 분산할 필요
- 개발협력 예산 증대 대비, 개발협력을 수행하는 인력 부족 현상은 한국의 개발협력 전반에 나타나는 취약점으로 개선 필요

5

한국의 원조지원 수단과 파트너십

-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개발효과성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, 삼각협력, 지식공유, 개도국 역량강화에 있어 강점을 보유
- 협력파트너 입장에서 볼 때, 잦은 인력교체, 협력 우선순위 변화, 유연하지 못한 예산집행 방식 등은 협력의 애로사항
- 수원국 요청주의에 기반한 협력 방식은 바람직하나, 효과성 분석이 필요하며,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필요

6

한국의 성과관리, 평가 및 교훈

-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 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있어 왔으나, 평가에 대한 품질관리 제고에 더욱 노력할 필요
- 평가결과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 있으며,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공동 평가 등을 확대할 필요

7

인도적 지원

- 인도적지원 전략을 마련하였으나, 지원 우선순위 설정, 파트너십, 전문성 강화 등 중장기적인 개선 방향 필요
- 글로벌 위기 및 위기대응에 대한 대중의 인식제고를 위해 인도적 지원 관련 정보 제공 등 소통 노력 확대 필요

□ OECD DAC (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, 개발원조위원회)

- OECD 산하 25개 위원회 중 하나이며, OECD 회원국 중 가입 심사 기준*을 통과한 회원에게만 자격 부여

* ①개발협력 조직·전략·정책 보유, ②적절한 원조 규모(총액 1억불 이상 또는 ODA/GNI 0.2% 이상), ③원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·평가시스템 보유 유무

- 현재 30개국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, 한국은 2010년 회원 가입

* 한국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, 미국, 캐나다, 영국, 프랑스, 독일, 이탈리아, 스페인, 헝가리, 포르투갈, 덴마크, 네덜란드, 핀란드, 노르웨이, 스웨덴, 벨기에, 스위스, 아일랜드, 오스트리아, 룩셈부르크, 아이슬란드, 그리스, 체코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폴란드, EU

- DAC은 對개도국 개발협력 활동*과 관련된 정보 교류 및 ODA 관련 정책에 대한 공여국간 협의·조정 기능을 수행

- 회원 가입에 따른 의무사항* 준수 필요

* ① DAC 채택 권고사항 이행, ② ODA 통계 제출, ③ 동료검토(Peer Review) 수검 및 심사국 참여, ④ DAC 회의 및 분과위원회 참석 등

□ 동료검토(Peer Review)

- DAC 회원국의 ODA 정책 및 집행에 대한 주기적(45년 단위) 평가*로 검토 후 대상 회원국에 권고사항을 제안 (각 국은 자발적으로 이행)

* 평가단은 DAC 사무국인 OECD 개발협력국(DCD)과 DAC 회원(2개국)으로 구성

- 회원국은 이를 자국 ODA 정책 개선을 위한 계기로 활용